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2항에 따라 「감문구야지구」의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15조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안내 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.

1. 공고대상 : 32명 불임 참조(감문구야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)
2. 공고기간 : 2019. 8. 27. ~ 2019. 9. 11. (15일간)
3. 공고장소 : 시 홈페이지
4. 기타사항

가.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
바라며,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시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
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청 열린민원실 지적재조사계(☎054-420-6388,6295)로 문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8. 27.

김 천 시

